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요구 실효성 확보〉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61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예지 · 고동진 · 김소희 · 박덕흠 · 최수진 · 김용태
서천호 · 안철수 · 김기현 · 강대식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7. 14.

3. 회 부 일 : 2025. 7. 15.

※ 의안번호 : 1146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여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②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비공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생략)	제12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2조¹⁾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경고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공직후보자의 부동의나 다른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등²⁾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속력 있는 제재도 불가능하여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³⁾ 그간 실무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

-
- 1)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등
-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등 제출 의무와 개별법에 따른 정보 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⁴⁾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침해 염려 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⁵⁾⁶⁾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비공개 열람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가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4) 최근 국회는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는데, 정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보호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를 부친 결과 해당 개정안은 부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지 못하였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의 및 재의 경과>

구 분	운영위 의결	본회의 가결	정부 이송	정부 재의요구	본회의 재의의 건 부결
일 자	2024. 10. 31.	2024. 11. 27.	2024. 12. 6.	2024. 12. 19.	2025. 1. 8.

5)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4헌나 전원재판부[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6)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다른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의 적시 확보를 통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정보 등은 개인의 모든 행위를 추적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그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된 법적 장치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⁷⁾

둘째, 개정안과 유사하게 인사청문회의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⁹⁾

문 의 처
02)6788-5017

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함(2025. 8. 29. 기준).

8)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86호),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19호),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72호)

9) 추가로, 개정안의 자료제출 의무 명시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바람직함.